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 2014. 8. 20 대학원운영위원회

제 1 조(목적) 영남대학교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자에게 학술·학위논문 연구, 교비·외부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와 학위논문 청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적을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등록자격) 연구생의 등록은 석사, 박사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제 1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등록대상) 연구생의 등록대상은 등록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등록대상자별 등록이행 및 등록학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대상		등록이행	등록학기
학술·학위 논문 연구자		자율등록	수료자가 필요로 하는 학기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지원인력양성사업	의무등록	사업 및 과제참여 학기
	• 국가연구용역사업 • 지자체등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사업 • 교비연구과제	자율등록	
학위논문청구자		의무등록	학위논문청구 학기

제 4 조(학적보유) 연구생의 학적은 연구생 등록학기에만 부여한다.

제 5 조(등록비) 연구생의 학기당 등록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학위논문 청구자는 등록비 외 논문심사료를 별도 납입하여야 한다.

구 분	등록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150,000원
자연계열	200,000원

제 6 조(등록절차) ① 연구생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생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7조에 정한 기간내에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비는 연구생 등록비 납부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등록기간내에 대학원 행정실 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등록기간) 연구생의 등록기간은 매학기 개시일부터 수업 1/4선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 요건이 발생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다.

구 분	등록 기간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과제(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또는 과제(사업) 선정 후 과제(사업) 개시 이전 기간
학위논문 청구자	대학원에서 정한 학위 청구논문 제출기간

제8조(중복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비 수납) ① 동일 학기에 2종류 이상(중복)의 등록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비는 중복수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초(신규)등록시에 중복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등록비를 수납하며 또는 당초(신규)등록시에는 하나의 등록대상자로 등록한 후 또다른 등록대상자로 추가 등록 하는 경우에 추가 등록비는 수납하지 않는다.

제9조(등록취소) ① 연구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등록의무자인 경우 등록의무 요건이 상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생 등록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 등록 취소자에 대하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등록 후 취소신청서 제출 기간까지 등록비 상당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비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혜사항) 연구생 등록자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 연구과제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2. 대학원생 학술연구활동 경비 지원(대학원 행정실)
3. 대학원 열람실 이용(대학원 열람실)
4. 대학원 연구생 증명서 발급(종합봉사센터)
5.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중앙도서관)
6. 정보전산원 전자시스템 이용·자격부여(정보전산원)
7. 실험실습실 이용(학과사무실)
8. 교내 주차공간 이용(주차관리소)
9. 이공계 연구생 상해보험 가입(시설관리처)

제11조(연구생 제적) 연구생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이 경우 등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1. 연구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연구생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12조(수입금 운영) ① 연구생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비, 연구생의 학교시설 이용비, 연구 및 논문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지도비 등 경비운용을 위해 등록비 수입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② 제1항의 지도교수 지도비는 대학원에서 매 학기말에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한다.

배분대상	배분 목적	배분율	비 고
학 교	학교 시설 이용	30%	교내기관 간접관리비 기준
대 학 원	학사 업무 관리	20%	
지도교수	연구 및 논문 지도	50%	

제13조(보칙)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학위논문청구자가 연구생 등록을 하는 자

는 해당 등록학기 내에서 학술·학위논문 연구자로서 연구생 등록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만을 위한 수료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전에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간 또는 당해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연구생 등록을 예외로 한다.

부 칙 (2014. 8. 2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년 학기 대학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수료과정	석사(), 박사()	수료연도	년도	학기	
수료학과		수료전공			
성명		학번			
생년월일		전화(H·P)			
지도교수	소속	성명			
등록대상	구분			신규	
	1. 학술·학위 논문 연구자			()	
	2.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3. 학위 논문 청구자			()	
교수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인경우	과제또는사업명				
	지원기관명				
	연구(사업)기간				
	연구(사업)책임자	소속	성명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연구생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주임교수 : (인)					
대학원장 귀하					

① 등록대상 1, 2, 3 전부 또는 선택하여 등록을 하되 등록대상 2 또는 3을 선택하는 자는 등록대상 1도 동시 등록한다.

② 당초(신규)등록 신청하는 자는 등록대상 신규란의 해당란에 표시

③ 당초(신규)등록한 후 동일 학기내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자는 추가란에 표시

④ 지도교수가 2명인 경우 지도교수 2명 모두 기재

연구생 등록 안내

1. 학기당 등록비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150,000원
자연계열	200,000원

※ 통지서 및 영수증의 납부금액란에 해당금액 기재

2. 신규등록한 후 추가등록 하는 경우 추가 등록비는 면제됨.
 ※ 통지서 및 영수증의 납부금액란에 면제로 기재

4. 등록기간은 매학기 개시일부터 수업 1/4선 이내 해도 등록대상 2, 3은 등록의무 요건이 발생한 시기에 등록 할 수 있다.

5. 납부장소 : 대학원 행정실
 (또는 별도지정 장소)
 ※ 의학과는 의대행정실로 납부

(대학원 보관용)

수료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연도	년도	학기		수료연도	년도	학기	
수료학과		수료전공		수료학과		수료전공	
성명				성명		성명	
1. 학술·학위 논문연구자 ()		1. 학술·학위 논문연구자 ()		2. 교수연구 과제 또는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 ()		2. 교수연구 과제 또는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 ()	
등록대상		등록대상		3. 학위논문 청구자 ()		3. 학위논문 청구자 ()	
남부금액	원정	남부금액	원정				
20 학년도 학기 연구생 등록비를 지정 기간 내에 대학원 행정실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학년도 학기 연구생 등록비를 정하 영수하였습니까.						
수납일자	년 월 일	수납일자	년 월 일	수납일자	년 월 일	수납일자	년 월 일
수납자	(인)	수납자	(인)	수납자	(인)	수납자	(인)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수납일자	년	월	일
수납자	(인)		

6 4.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년 학기 대학원 연구생 등록 취소 신청서

수료과정	석사(), 박사()	수료연도	년도	학기
수료학과			수료전공	
성명			학번	
생년월일			전화(H-P)	
지도교수	소속		성명	
등록사항 및 취소사유				
등록대상 ※ 해당란에 ✓ 표	구분		등록대상	취소대상
	1. 학술·학위 논문연구자		()	()
	2.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
	3. 학위논문 청구자		()	()
취소사유				
위와 같이 연구생 등록을 취소 하고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주임교수 : (인)				
대학원장 귀하				